



| | | |
|---|--|---|
|  | Classification : <p style="text-align: center;">규정</p> | Revision No: <p style="text-align: center;">00</p> |
| | Title : <p style="text-align: center;">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p> | Page : <p style="text-align: center;">0/7</p>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주성엔지니어링(주)

| | | | | |
|---|------------------|------------------|--------------|--------|
|  | Classification : | 규정 | Revision No: | 00 |
| | Title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 Page : |

목 차

| | | |
|-------|-------------------------|---|
| 제 1 장 | 총 칙 | 3 |
| | 제 1 조 【목 적】..... | 3 |
| | 제 2 조 【적용범위】..... | 3 |
| | 제 3 조 【권 한】..... | 3 |
| 제 2 장 | 구 성 | 4 |
| | 제 4 조 【구 성】..... | 4 |
| | 제 5 조 【위원장】..... | 4 |
| | 제 6 조 【개최주기】..... | 5 |
| 제 3 장 | 회 의 | 5 |
| | 제 7 조 【소집권자】..... | 5 |
| | 제 8 조 【소집절차】..... | 5 |
| | 제 9 조 【결의방법】..... | 5 |
| | 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5 |
| | 제 11 조 【통지의무】..... | 6 |


| | | | | |
|---|------------------|------------------|--------------|--------|
|  | Classification : | 규정 | Revision No: | 00 |
| | Title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 Page : |

제 12 조 【의사록】 6

제 4 장 보 칙 6

제 13 조 【간사】 6

제 14 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6

| | | | | |
|---|------------------|--|--------------|---------------|
|  | Classification : | <p style="text-align: center;">규정</p> | Revision No: | 00 |
| | Title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 Page : 3/7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권한】

- ①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독립이사 후보 추천
 2. 기타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관련 법령 및 해당 운영규정 제4항에 의거, 독립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위원회의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최근 3년 이내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경영상 책임으로 퇴직한 자
 2. 최근 2년 이내 경쟁기업체 또는 공정거래법상 경쟁기업체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3. 최근 2년 이내 경쟁기업체의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인 자
 4. 최근 2년 이내 경쟁기업체와 독립이사, 고문, 자문 등의 계약을 이행한 이력이 있는 자
- ⑤ 해당 운영규정 제4항의 경쟁기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재직 중 영위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일체의 사업을 영위할 가능

| | | | | |
|---|------------------|------------------|--------------|--------|
|  | Classification : | 규정 | Revision No: | 00 |
| | Title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 Page : |

성이 있는 업체를 의미한다.

1. 반도체제조장비 제조업
2. 디스플레이제조장비 제조업
3. 태양광 제조 및 생산업 등 주성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분야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의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 8인 이내 이사로 구성하며, 반드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해임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장)를 준용한다.

제 6 조 【개최주기】

-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 | | | | |
|---|------------------|--|--------------|---------------|
|  | Classification : | <p style="text-align: center;">규정</p> | Revision No: | 00 |
| | Title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 Page : 5/7 |

제 7 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회의 1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유선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전원 참석 시에만 위원회 소집 및 개최에 대한 성원이 충족된다.
- ② 위원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결의방법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위원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전체의 출석과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된다.
 2. 대표이사 유고 또는 공석 발생 시, 결의 권한은 이사회 의장에게 위임하며, 이사회 의장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장)를 준용한다.

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 | | |
|---|------------------|--|--------------|--------|
|  | Classification : | <p style="text-align: center;">규정</p> | Revision No: | 00 |
| | Title : | <p>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p> | | Page : |

제 11 조 【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이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 결의할 수 있다.

제 12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3 조 【간사】

-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을 포함하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